

의안번호	제 449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12월 일 (제 285 회)

##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12월 7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

의안 번호	44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12월 7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도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다양한 체육 재정수요 충족
  - 체육관, 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 인프라 조성
- 현재의 재정운용 틀로서는 체육 재정수요 충족에 한계
  - 별도의 재정확보, 긴요한 재정수요 선별 충족 필요

### 2. 주요내용

- 조성재원 : 일반회계 전출금(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% 이내)
- 조성규모 : 200억원
- 기금용도 :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
- 기금운용 : 기금 총액의 30% 범위에서 사용
- 유효기간 : 2019. 12. 31

### 3. 의안전문 : “붙임참조”

### 4. 관련법령 발췌 : “붙임참조”

### 5.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: “해당없음”

## 6. 입법예고 결과의견

- 예고기간 : '09. 10. 9 ~ 10. 28(20일간)
- 예고매체 : 도보, 홈페이지
- 수렴결과
  - 제2조제1항의 순세계잉여금의 “3% 이상을 “3% 이내”로 조정  
⇒ “3%”로 고정(부분반영)
  - 제2조제3항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앞에 “이 기금  
으로 조성되는” 문구 삽입  
⇒ “의견 수렴” 반영
  - 제2조제4항의 정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 중 “기타  
수익금” 삭제  
⇒ 기존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기탁하는 출연금 이외 별도의 기탁  
수요 발생할 개연성 있으므로 “안” 존치

## 7. 제264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

- 심의일시 : '09. 12. 4(금) 09:30
- 심의결과 : 제2조제1항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“3%”를  
“3% 이내”로 조정 의결
- 조정사유 : 우리도 재정형편상 출연규모 과다 및 예산편성  
재량 기속

## 8. 제안자 의견

- 도민의 소득증가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는 건강욕구 및  
대규모 체육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 
원안 의결 요망

## 충청북도 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(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% 이내)
2.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
3.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
4. 정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
2.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·참가 지원 사업
3.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활동
4.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**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① 도지사는 기금을 충청북도 금고(체육진흥기금 계좌)에 예치·관리하되, 기금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30%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)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(분임)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,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 담당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
2.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
3. 충북체육 관련 단체 임·직원 등

제7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

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간사)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1조(수당 등)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·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①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를 말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 제52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

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·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
2.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

### □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(예탁의무)

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 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)

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